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| 보도참고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 시점 2026. 11. 2.(월) 12:00 배포 2026. 11. 2.(월) 10:00

5월에 놓친 근로·자녀장려금, 12.1.까지 '꼭' 신청

- 2025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미신청한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 -

1 미신청 가구에 신청 안내, 12월 1일까지 신청

□ (개요) 국세청은 2025년 귀속 **근로·자녀장려금**을 아직 **신청**하지 않은 **26만 가구**에 기한 후 신청 **안내문**을 **발송**한다.

○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**12월 1일(화)까지 신청**할 수 있으며, 신청기한이 지나면 **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**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.

○ 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**수급 가능성이 있는** 것으로 **추가**로 확인된 **1만 가구**도 안내 대상에 **포함**한다.

○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·재산 등을 심사하여 **산정액의 95%**(5% 감액)를 **2027년 1월 15일(금)**에 **지급**할 예정이다.

▌2025년 귀속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기간별 지급률▐



2 소득·재산요건 및 지급액

□ (신청자격) **근로장려금**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**단독**가구 **2,200만 원**, **홑벌이**가구 **3,200만 원**, **맞벌이**가구 **4,400만 원 미만**이어야 하고, **자녀장려금**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**7,000만 원 미만**이어야 한다.

○ 근로·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**2억 4천만 원 미만**('25.6.1. 기준)이어야 하며, **부채**는 **차감하지 않는다**. 재산합계액이 **1억 7천만 원 이상**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**50%만 지급**된다.

□ **(지급액) 근로장려금**은 최소 3만 원부터 **단독**가구 **165만 원**, **홑벌이**가구 **285만 원**, **맞벌이**가구 **330만 원까지** 지급되며, **자녀장려금**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부터 **최대 100만 원까지** 지급된다.

○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**심사한 결과**에 따라 장려금이 **지급되지 않거나**, 안내된 **예상지급액**과 **달라질 수 있다**.

3 신청은 간편하게, 상담은 편리하게

□ **(신청방법)** 우편 안내문의 **큐알**(QR)**코드**, 모바일 안내문의 '**신청하기**' 또는 **자동응답서비스**(ARS)(☎1544-9944)를 통해 **간편하게 신청**할 수 있다.

○ **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**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**홈택스**(PC·모바일)에서 **신청***할 수 있다.

* [신청경로] 홈택스 → 로그인 → 장려금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→ 직접입력 신청

○ **시간제근로·일용근로** 등으로 일시적 소득이 발생한 **청년층**은 물론, 현재 **퇴직**한 경우라도 **'25년**에 **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**이 있다면 **대상**이 될 수 있다.

* [안내대상자 확인경로] 홈택스 → 로그인 → 장려금 →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

□ **(상담안내)** 고령자 등 모바일·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**장려금 상담센터**(☎1566-3636)를 통해 **신청 도움**을 받을 수 있으며, **상담센터**(평일 9시~18시) 또는 **자동응답서비스***(24시간)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.

* [세무서] ☎대표번호 → ARS → 장려금 → AI상담사, [국세상담센터] ☎126 → 세법상담 → 장려금 → 상담사

4 더 많은 가구에, 더 두텁게 지원

□ **(제도 확대)**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'27년 귀속분부터 **근로장려금 제도**를 **확대**한다.

○ **'26년 세법개정(안)**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**최대 지급액**은 단독가구 180만 원, 홑벌이가구 310만 원, 맞벌이가구 360만 원으로 **인상**되고, **소득요건**도 단독가구 2,600만 원, 홑벌이가구 3,700만 원, 맞벌이가구 5,200만 원 미만으로 **완화**된다.

□ **(향후 계획)** 국세청은 장려금 제도 확대에 맞춰 **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**에 **촘촘히 안내**하고, **청년층**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**홍보**를 통해 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가 **빠짐없이 지원**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	책임자	과 장 정상수 (044-204-3801)
		담당자	사무관 송지원 (044-204-3812)
<협조>	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	책임자	과 장 권동철 (044-204-2551)
		담당자	사무관 정명숙 (044-204-259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및 지급액

□ 신청요건 : 1가구에서 1명만 지급

≫ '25년에 **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**(배우자 포함)로서 **아래 요건**을 **모두** 갖추어야 합니다.

가구유형	가구원 요건 ('25.12.31.기준)	❹소득 요건(부부합산) ('25년 연간 총소득) 근로장려금	❹소득 요건(부부합산) ('25년 연간 총소득) 자녀장려금	❺재산 요건 ('25.6.1.기준)
단독가구	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	**2,200만 원** 미만	-	**가구원 전체**의 재산 **2억 4천만 원 미만** **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**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, 2억 4천만 원 미만은 장려금 **50%만 지급**
홑벌이가구	❶배우자, ❷18세 미만 부양자녀, ❸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	**3,200만 원** 미만	**7,000만 원** 미만	
맞벌이가구	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	**4,400만 원** 미만		

❶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서 총급여액 등*이 300만 원 미만인 자

*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×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 등은 제외

❷ '07.1.2. 이후 출생, ❸ '55.12.31. 이전 출생, ❷,❸연간소득금액*이 100만 원 이하인 자

*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·퇴직·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은 제외

❹ 근로소득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×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 및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**비과세·퇴직·양도소득은 제외**

❺ 부동산·승용차(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), 분양권, 전세금*, 예금, 주식, 회원권 등 합계액

* 주택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(기준시가의 55%) 중 적은 금액 적용, 상가는 실제전세금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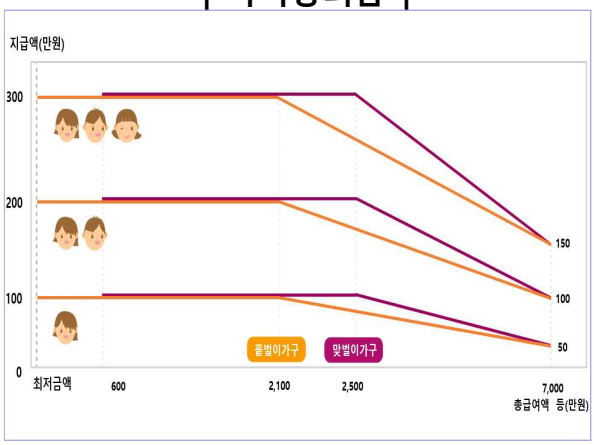
[**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: 임대차계약서를 제출**하면 실제전세금으로 재산요건 기준을 판단합니다.]

□ 지급액

| 근로장려금 |



| 자녀장려금 |



○ 신청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**총급여액 등**에 따라 **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**, 재산 합계액이 **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**인 경우 산정액의 **50%만 지급**됩니다.

참고 2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
1 모바일 홈택스 (이용시간: 06시~24시)

□ (국민비서) 가입자는 알림 등록 앱(카카오톡, 토스 등), 미가입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



□ (카카오톡/PASS) ① 열람하기 → ② 본인인증 → ③ 신청하기 →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



□ (문자메시지) ① 열람하기 → ② 본인인증 → ③ 신청하기 →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

○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의 안심마크([web 발신] 확인된 발신번호)가 표시되므로, 이를 확인한 후 스미싱 걱정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
② 자동응답시스템(ARS 1544-9944) (이용시간: 06시~24시)

□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시 **스미싱**이 **걱정**되는 경우에는 **ARS(1544-9944)**를 통해 **개별인증번호**를 **입력**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③ 상담센터 「신청도움서비스」(이용시간: 09시~18시)

□ 안내문을 받았으나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(ARS) 이용이 어려운 경우, **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**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④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(이용시간: 06시~24시)

□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,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참고 3 주요 문답 사례

1 장려금 안내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

○ **안내대상 여부**는 **홈택스**(PC, 모바일), **ARS**(☎1544-9944), **장려금 상담센터**(☎1566-3636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 [홈택스(PC)]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> 근로·자녀장려금 > 장려금 안내 정보
[홈택스(모바일)]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> 근로·자녀장려금 >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
[ARS] 1544-9944 > 근로·자녀장려금 > 주민등록번호 입력 >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

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○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**신청요건**을 **충족하는 경우**에는 신청할 수 있으나, **홈택스**(PC, 모바일) 또는 **서면 신청만** 할 수 있습니다.

* 신청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.

3 이번에 처음으로 '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았는데, 왜 5월에는 안내받지 못했나요?

○ **근무처**가 **소득자료**를 **법정 제출기한**(3월 10일) **이후**에 **제출**하면, 5월 정기분 신청 안내 시 해당 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안내되지 않았습니다.

○ 올해부터는 **뒤늦게 제출된 소득자료**까지 **다시 분석**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께 처음으로 **기한 후 신청**을 **안내**하고 있습니다.

4 신청한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
○ 장려금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**계좌 또는 현금**으로 **지급**되며, **현금**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**우체국에서** 장려금을 **수령**할 수 있습니다.

- 다만, **입력한 계좌**가 **압류된 경우** 장려금을 **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.**

참고 4 '26년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관련 세법 개정(안)

□ 근로장려세제(EITC)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(조특법)

○ (개정 취지) 저소득 가구의 **근로 장려** 및 **소득 지원**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소득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수급구간을 확대

○ (적용 시기) '27.1.1. 이후 개시하는 **과세기간분**('27년 9월 신청분)부터 적용

| 근로장려세제(EITC) 지급액 및 소득요건 확대(안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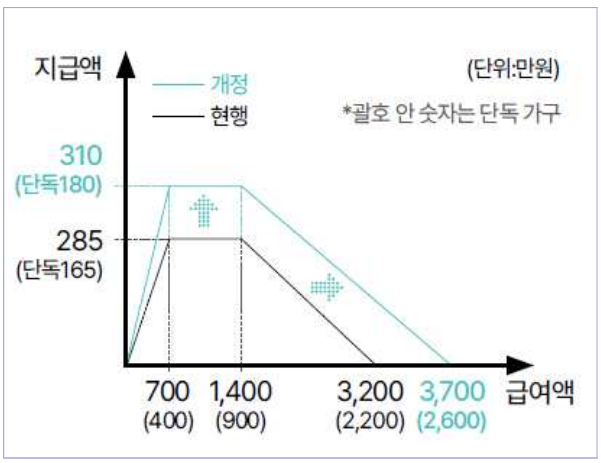
(만 원)

가구유형	소득요건 확대		최대지급액 인상		최대지급액 수급구간*	
	현행	개정(안)	현행	개정(안)	현행	개정(안)
단독가구	2,200 미만	**2,600** 미만	165	**180**	400~900	(현행과 같음)
홑벌이가구	3,200 미만	**3,700** 미만	285	**310**	700~1,400	(현행과 같음)
맞벌이가구	4,400 미만	**5,200** 미만	330	**360**	800~1,700	800~**1,800**

*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구간 상한을 1,700만 원 → 1,800만 원으로 확대하여 혼인페널티 해소

(사례) 혼인 전 단독가구 각 900만 원 소득 시 총 330만 원 수령 가능하나, 혼인 후 맞벌이가구로 적용되어 총 318만 원으로 감액되는 불이익 존재

| 단독·홑벌이가구 |



| 맞벌이가구 |

